

제주시 조천읍 조천 해동그린앤골드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자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생활환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함)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3조 제1항 및 제27조 제6항부터 제6항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연립주택은 '신택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에 의한 분양형태로서 주택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임지 ('주)이펙트' 및 수탁자 '대한투자신탁투자' 간 2015년 10월 30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역에 따라 공급되는 것임이다.
- 본 연립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별보증금을 받은 연립주택임이다.
- 본 연립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년 11월 30일이고, 계약체결은 2016년 12월 7일부터 가능하다.
- 본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임이다.
- 본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임상주택"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입대시일자 우선공급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한 입대시일자 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지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축민원과 - 72400호 (2015.11.3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5번지 일원

- 대지면적: 9,224㎡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실제공용 시 확정측량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규모: 지하 2층 ~ 지상 4층, 연립주택 4개동 96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층/지하층)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서비스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34.59	12.16	46.75	1.70	6.19	54.64	57.7534
연립주택		34.59	48						
		69.18	16	69.18	24.32	93.50	3.40	104.70	115.5068
		81.46	24	81.46	22.35	103.81	3.72	118.63	136.0102
	84.66	8	84.66	22.88	107.54	3.84	16.56	127.94	141.353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공급 세대수	총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	중도금(60%)				잔금 (%)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15%)	2차(15%)	3차(15%)	4차(15%)	
							계약시	2016. 03. 31	2016. 05. 31	2016. 07. 29	2016. 09. 30	입주자일정
34.59	48	2층	16	18,907,607	134,092,393	153,000,000	15,300,000	22,950,000	22,950,000	22,950,000	22,950,000	45,900,000
		3~4층	32	18,907,607	138,092,393	157,000,000	15,700,000	23,550,000	23,550,000	23,550,000	23,550,000	47,100,000
69.18	16	타~4층	16	37,815,215	267,184,785	305,000,000	30,50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91,500,000
81.46	24	1층	6	44,527,716	242,072,284	286,600,000	28,660,000	42,990,000	42,990,000	42,990,000	42,990,000	85,980,000
		2층	6	44,527,716	245,472,284	290,000,000	29,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87,000,000
		3~4층	12	44,527,716	249,972,284	294,500,000	29,450,000	44,175,000	44,175,000	44,175,000	44,175,000	88,350,000
84.66	8	1층	2	44,276,902	249,023,098	295,300,000	29,530,000	44,295,000	44,295,000	44,295,000	44,295,000	88,590,000
		2층	2	44,276,902	252,023,098	298,300,000	29,830,000	44,745,000	44,745,000	44,745,000	44,745,000	89,490,000
		3~4층	4	44,276,902	256,523,098	302,800,000	30,280,000	45,420,000	45,420,000	45,420,000	45,420,000	90,840,00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나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6 또는 ㎡ ÷ 3.3058

• 본 연립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총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에 책정한 금액임.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환경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환경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잔용면적은 연면적에서 간격 등 외 면적 중순간 치수로 산정된 후한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하 네다소수점 5공(면적) 상할 수 있음. 상기 공급금액에는 산 주택형별 면적 차이 반영이 반영되어 있음. 취득세 기준 세법상 등록세 포함이 미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단단 보도, 주차면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소수점 5공(면적) 상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공무부처에 의한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월별 불출금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영업일일 납부일임)

• 잔금은 사용감시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입사יום 송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며, 나머지 금액은 사용감시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무장리 절차 등의 이유로 소 일일당에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처항은 적용되지 않)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칭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처(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본 연립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금을 받은 연립주택으로,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모 · 피산 등으로 보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환경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청서 중 부처직하도 편명 등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규모 간에 소용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2. 계약체결 등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30) 현재 해당 제주시내 거주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세 이상인 자녀내에서 거주하는 세대외동거자(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거주지역 및 청약특성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함

■ 계약체결 및 장소

• 일시: 2016. 12. 17. (목) 13:00 ~ (선착순, [시간]: 10:00 ~ 16:00, 첫 계약일 이후)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24 2층 (오라3층, 비에스빌딩)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등·호수 결정

• 본 연립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입주자자족, 주택장악지역, 재정청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선착순 호수 지정 후 계약 결정함.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본인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초본·통, 배우자의 주민등록증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사신고증 서본 1부 또는 국내거사신고증 사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사본)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 인감증명서(등·호: 연립주택 계약 위임문) 1통 -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인감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번호에 한하여 인감증명서의 효용은 공문으로 발급하므로 효도를 직접 가져와 제출하기 바람. (외국인은 공문신용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신청 후엔 관계 확인 필요시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공문 요구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납부: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비로써 화폐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이러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내분	비고
신한은행	100-031-144483	대한투자신탁투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시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무통장 입금은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처직하도 편명된 자는 소규모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지는 않음)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권한 세부내용은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다. 관련정책 및 대출 상환의 종류, 기간의 사항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추진대응대책의 제한(금,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한 조건에는 계약자가 부담하며(이 경우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능)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고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신청되어 가산될수있으며, 대출 상환 시 보증금 상환에 관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에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사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용기금의 중도금 대출조건 및 대위변제 요구 등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중도금(분양대금의 60% 이내)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시 추가 조건 대출을 알린바위 예정임

■ 입주자 사전명분 확인제도: 입주 전에 입주자가 사전 명분여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명분 행사를 실시함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 입주예정일: 2016년 12월경

• 실업자임이 입주예정일전에 일정기간을 경유 미더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업주자일정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청서 전체내용,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액시 피해보상은 주택법(주택법) 제63조를 적용함.

3.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9항 2호 594 599에 의거하여 본 연립주택은 신축임이 없고, 주택형 84.66평 및 84.06평은 발코니 확장용으로 분양되며 발코니 확장에 대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면적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게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2 개정시행).

• 상기 주택형의 발코니 구조변경은 일괄확장용 전례로 제시된 건축형식 외의 개별 설계 및 유지보수 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세대 간 조성에 따라 단열재 및 차기 벽체의 두께, 세대 간 공간 등 일정 기준을 유지하며,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인자 등 의 그림자도 다소 두꺼워질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단열재도 설계 당시 소비자외의 상황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와도 모델은 제품의 품질, 공기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또는 동등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재에 대한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택형별 확장부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분양사무실을 방문 하시기 확인하시기 바림.

• 발코니 확장을 개발시공단계 범위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일 경우 계약자는 예치시 · 절차 설계기준, 피산,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한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외부 전선형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난방비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입주 초, 전등, 분전 등을 조려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초 상담기간 관리부서 등과 회의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유지하기 바림.

• 수 탁자형발코니 단열재도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영기구 및 배산기구의 타인,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배기구 상부에 편지주머니 환기배기구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루 배기 단열에 의한 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성에 따라 단열재와 차기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도 상이하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다소 결로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 수전선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대(가)란 발코니는 단열공격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사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부구조 대상에 제외)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동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사용 및 우선시 소용 등도 발생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초 개공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및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확대에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 중실에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연립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발코니에 열대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완전적으로 하자책임 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연립주택 사업주체에 말발정호지 하자의 책임 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안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나 유의하시기 바림.

■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재하는 기본 마진계 수(내복비, 벽지, 조명, 유휴)가 일정 차오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 할수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진계 항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바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갈레णी 포함)기실, 주방 및 식당, (인입, 화장실)현관, (강마루)침실, (인입)욕실	바닥 난방, 발코니타일 방수, 발코니타일 배수슬라브
2) 벽, 천장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디탈, 주방벽타일, 몰딩, 유문천장 인테리어 마감	벽 : 인입+선고벽도 / 미장 / 콘크리트면타일, 천장(천정형,선고벽도), 커튼박스
3) 조영기구	부처형 조영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덴트, 스위치
4) 욕실	타일배관, 벽, 천정 석재인도대리석 콘트, 대리석반대일, 욕조, 하부통, 코킹, 욕실방수기, 스위치, 선등, 욕실장, 샤워유스, 욕실문,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팬트, 비더배수 슬라브, 전기, 통배관배선
5) 주방기구	주방기구: 상, 하부장식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주방냉기, 주방수전식 싱크볼, 가스 및 전기레팅 등 주방가전 일체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소화회기 설치)관련전기, 통산 배관수전/배선주방TV 등 통의 전기인입선, 주방 배기팬트
6) 천호	천호인입용, 목문발, 목문손잡이 및 정형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호창 기틀, 문문사물, 플라스틱 천호천하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발코니 도어
7) 가구류 및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선택식 불빛이장, 시스텝기구 등 가구류제	싱크대, 기실 온도조절기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구분	34.59	69.18	81.46	84.66	비고
마이너스 옵션 금액	10,049,900	20,083,800	22,298,368	23,039,582	
마이너스옵션선 선택시 포함된 기본형식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된 입주자가 취함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마이너스옵션을 선택 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은 비확장형으로 시공됨.					
마이너스옵션선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함.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발발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선택만 가능함.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자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자 가능한 날(입주자지정)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 옵션 범위 내의 수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축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선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증금입을 입주자 스스로 징수하여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바림.					
마이너스옵션선 부분 시공시 가시공간 소멸,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기타공기 시스물, 건물외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자에게 있음					
마이너스옵션선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선 부분 공사 시 가시공간 소멸, 전기, 정보통신,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자에게 있음.					
마이너스옵션선 세대의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용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마이너스옵션선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선도, 설치관련 확작성)을 작성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선 계약세대는 주택형에 따라 개별 제공 옵션사항이 제외됨					

4.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중단의 평형대신 넓이(㎡)법 단위원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림. [평형 환산방법: 평형면적(㎡) × 0.3026 또는 평형면적(㎡) ÷ 3.3058]

•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무장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호 정산하에 함(단, 소수점이하 4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용 정산금액 없음)

• 공공장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드림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 상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 층 홍보물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적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정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의 고차지 등은 실재 확인시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보일 수 있음.

• 세대내 모든 가구, 전자제품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고, 주택형에 따라 개별 제공 옵션사항의 차이가 있으나 별도로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상담을 통해 정확한 홍보물의 옵션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분양시 제시된 조경도, 세대 평면도, 면적, 차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상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상충계산을 위하여 공청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른 대안형식 후 변경 될 수 있음.

• 본 연립주택은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계약이 추진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의거한 2회한 시행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연립주택 기초구조는 굴포 후 지내리시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계약 발생되는 경합인 설계변경 시(변경된 시(변경된 시)상변경으로 인한 일부 가구 구조 수차변경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지 않고 동의하며)할 것.

• 층고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도로, 폭, 단선 등 도로연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수료,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용역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 따라 단지 경계 선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조정 및 세부사실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카탈로그에 표현된 제품은 차형의 품질, 품격, 색상,선정, 제조사의의 도산 등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